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00
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. .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 (안 제4조)

- 현행 : 300만원이상
- 개정안 : 1천만원이상

3. 근거법령 : 불임

4. 의안전문 : 불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- 첨부 : 1. 근거법령 1부
2. 입법예고문 사본 1부.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”를 “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6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3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지방재정법 제115조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94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</u>	<u>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</u>
<u>제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<u>지방재정법 제116조</u> 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제1조(목적)</u>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
<u>제4조(재정보증의 한도액)</u>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<u>300만원</u> 이상으로 한다.	<u>제4조(재정보증의 한도액)</u> 1천만원
<u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</u>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<u>지방재정법 제115조</u>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② ~ ③ (생략)	<u>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</u> ① 「 <u>지방재정법</u> 」 제94조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【관계법령】

지방재정법

[일부개정 2007.5.11 법률 제8423호]

제94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) ①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②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설하거나 채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.

제9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공무원(「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7.4.5 대통령령 제19995호]

제138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)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·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<개정 2007. 4. 5>

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

[일부개정 2006.10.4 법률 제8050호]

제2조 (정의) 이 법에서 "회계관계직원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2.12.30, 2006.10.4>

2.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
 - 가. 징수관·경리관·지출원·출납원·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공무원
 - 나. 가목에 규정된 자외의 자로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

【현행조례】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

[1995. 1. 3 조례 제26호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) 이 조례에서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,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
2.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

제3조(재정보증)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.

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,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,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.

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 다만,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보증한도액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 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6조(보험료의 지급)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) ①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, 피보증인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(1988. 4. 28. 조례 제518호)와 제천군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(1988. 4. 29.조례 제488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851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. 6. 26.

제 천 시 장

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의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재정보증 한도액을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13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. (안 제4조)
 - 현 행 : 300만원 이상
 - 개정안 : 1천만원 이상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17일 까지 제천시장 (참조 : 회계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551, FAX 641 - 5559 담당자 : 유달현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